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-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 사인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	비고
1	교원양성위원회	9	1	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2 협성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70조	협성대학교
2	사회봉사단운영위원회	9	1	협성대학교 사회봉사단운영규정 제3장 제6조	
3	등록금심의위원회	11	7	고등교육법 제11조	
4	대학평의원회	11	6	사립학교법 제26조의2	
5	설봉장학기금운영위원회	9	7	협성대학교 설봉장학기금운영규정 제5조	
6	성운박장원목사장학기 금운영위원회	7	3	협성대학교 성운 박장원 목사 장학기금 운영규정	
7	일반직원재심위원회	7	1	법인 정관 제88조의2	학교법인

II. 법 제11조제1항제2호 : 해당없음
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III. 법 제11조제1항제3호 : 해당없음

-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IV. 법 제11조제1항제4호 : 해당없음

-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